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 1. 9)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의 수당 지급을 통하여 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제2조)

(1)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포함)

(2) 지급금액 : 월25만원

나.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13. 7. 1 시행 예정인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1)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급금액 : 월30만원

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제3조 중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을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u><신 설></u>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u>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u><신 설></u>	제3조(장려수당) ----- <u>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u> ----- ----- ----- ----- ----- ----- -----. <u>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u>

	<u>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u>
--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87.12.31, 1992.1.24, 2010.1.7>

[별표 9] <개정 2013.1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본조신설 2001.1.29]

[별표 14] <개정 2013.3.23>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전 공무원(소방·교육직 제외)	소 방 직	교 육 직	
서울특별시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광역시장·도지사			950,000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 체장, 1급(상당), 전임계약직공무원(1호)		전문대학장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 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2호)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 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 (4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4호, 가급)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상당 직 위), 전임계약직(5호, 나급)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기 능직 5·6급, 전임계약직(6호, 다급)	소방경 소방위		155,000원
7급(상당), 기능직 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140,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직 8·9급, 전임계약직 마급	소방교 소방사		10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제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특3호봉과 대학 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4·5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가급·나급)	소방정·소방령	특3호봉과 대학 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학부장을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5급부터 기능7급까지,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6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다급·라급)	소방경·소방위·소방장	그 밖의 교육공무원(특1·2호봉 제외)	130,000원

-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 및 지급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산출내역
 - 의료업무수당 : 12명 × 250천원 × 12월 = 36,000천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 1명 × 300천원 × 12월 = 3,600천원

4. 작성자

총무과 인사계장 김희식 (480-6771)

총무과 행정8급 심대보 (480-6775)